

2024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6.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6. 24.(월)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이종수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김병준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8 : 감리자 행정처분서(징계의결서) ○ 2024-39 : 징계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 2024-40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 2024-41 : 구급활동일지 내 신고자 및 보호자 전화번호 ○ 2024-42 : (운영총괄과-4995) '똑섬2호 사업계획서 등 승인 알림' 문서 ○ 2024-43 : (운영총괄과-4844) '똑섬2호 사용허가 알림' 문서 ○ 2024-44 : 똑섬유원지 매점 똑섬2호점 관련 문의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38 : 기각 ○ 2024-39 : 기각 ○ 2024-40 : 기각 ○ 2024-41 : 기각 ○ 2024-42 : 기각 ○ 2024-43 : 부분인용 ○ 2024-44 : 기각

1. [의안번호 2024-38] : 감리사 행정처분서(징계의결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8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이 안건이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께서 서울시에 건축사징계 관련 위원회에 감리행정 관련 징계의결서를 공개해 달라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 지금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보면 이미 해당 구청에서 감리부실 등 관련해서는 내용을 받은 게 있다, 그리고 이 건축사의 실명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하니 지금 주장인즉슨 하여튼 징계의결서상에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익명처리하고 충분히 공개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비공개를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 000 주무관

개인의 징계사항은 저희 일관되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계속 비공개 결정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꼭 개인의 신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징계처분에 대한 상세내역들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령 정보공개청구인께서 이미 본인이 알고자 하는 해당 건축사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지난 회의 때 비공개로 결정한 사안 같은데 이게 같은 사안이 또 들어온 건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비공개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는 각하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다른 사람이 청구한 거예요?

○ 000 주무관

같은 사람이 했는데 저희도 각하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더 상정을 한 사안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 그때는 각하 처리하셔도 되지요?

○ 000 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들 논의 후에 재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이 안전 관련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안전은 이미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 기각으로 다뤘던 사안이고요. 그사이에 이와 관련된 별다른 어떤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사항에도 해당되고, 또 특정 건축사의 구체적인 징계사항 같은 경우는 사생활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네 분 다 기각 의견이어서요. 의견은 통일됐습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저희들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전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8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39] : 징계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39호 서울시의회 인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이 녹음파일하고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 녹음파일은 가지고 계신 거고 첨부는 안 해 주셨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이 녹취록이 이 회의록이라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소송 진행 중인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이런 거 들어온 건 따로 없나요?

○ 000 주무관

아직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변호인이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당사자가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하고, 또는 당사자에 대한 신문, 진술내용 이런 거 방어권을 기초로 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이렇게 회의 끝나고 나서 열람시킨 적은 있나요?

○ 000 주무관

아니요. 그런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 000 위원(장)

따로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조서 같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서명 내지 이런 것도 따로 받는 건 없나요?

○ 000 주무관

네, 없어요. 저희가 징계의결서를 그 혐의자에게 보내면서 이유서라고 해서 왜 이 사람이 해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법령, 그리고 기타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판결문 비슷한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거를 교부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징계의결서를 교부를 했고, 이 회의록에 대해서는 따로 열람을 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 000 주무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록 공개는 한 적은 없나요?

○ 000 주무관

없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 비공개된 사항이라서 아주 가끔 저희나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이나 녹취파일 공개청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개를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주심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소송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
청규정 이게 대통령령이더라고요.

이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호사는 당사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당사자한테 예외로 하는 규정도 없고, 또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서 제시하면 되는데 아마 그게
징계의결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징계의결서를 통보했으면 이 회의록은 그냥 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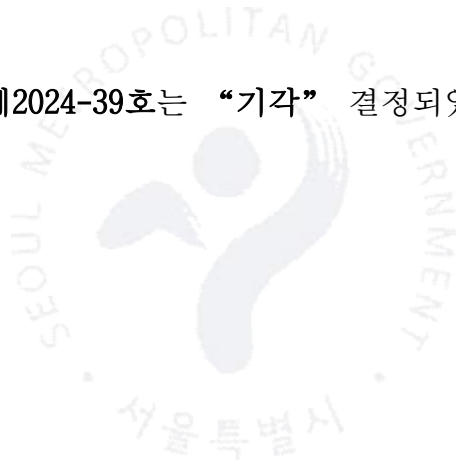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4-40]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40호 법무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소청심사위원회 건 법원을 통해서 문서제출명령이 들어온 거는 아닌 거지요?

○ 000 주무관

네, 아직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만약에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증거신청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걸 제출을 하시나요? 보통 이전에는 유사사례가 있나요?

○ 000 주무관

유사사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파악을 한 상황인데 그때 가서 다시 내부논의 과정 거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비공개자료로 주신 거 중에 녹취록도 이하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건가요?

○ 000 주무관

원본에서 내용 부분은 저희가 빼고 제출했습니다.

○ 000 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건만 그때 하신 거는 아닐 거니까, 이 건만 이렇게 추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저는 뭐 특별히 따로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하나만 그냥 사실 확인차 질문하는데요. 저 앞에 거는 이 회의록이라고 해서 전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49건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해서 이 회의록에 대해서 전문을 다 이렇게 없애고 블러 처리하고 다 주셨거든요.

○ 000 주무관

저희는 일단 내부직원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게 저희가 다른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게 아니라 법령상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 000 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그건 외부에 공개할 때고요. 이 회의체에서 어쨌든 비공개 결정을 저희가 하잖아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앞에 부서에서는 녹취파일은 안 주셨지만 저희한테 회의록을 전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 부서에서는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해서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공개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어느 정도 노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사전에 다 비공개라고 해놓고 저희한테도 비공개로 해 주시니까 아마 000 위원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에 것은 회의록 자체를 저한테 다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 000 주무관

저희가 법령상 비공개 자료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향후에는 내부에서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이 관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보공개위원회도 마찬가지로만 녹취록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녹음파일을 계속해서 갖고 있나요?

○ 000 주무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보관하고 있습니까?

○ 000 주무관

녹음파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함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 000 주무관

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이 건은 앞 건이랑 유사한데요. 이 건 역시 행정심판법이랑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위원 발언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걸 이의신청을 하면서 징계양정이나 절차상의 미비 지점을 다투고자 한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이 소청심사 과정 중에 있었던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징계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비춰서 그게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반했는지를 소송에서 다투면 되는 부분 같아서요.

어쨌든 1호로 기각 결정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000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저도 기각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다음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4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번호 2024-41] : 구급활동일지 내 신고자 및 보호자 전화번호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41호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처음에 청구인이 요청했던 내용은 응급구급일지였던 거지요?

○ 000 담당자

네, 구급활동일지입니다.

○ 000 위원(장)

거기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들만 지우고 이렇게 공개를 하셨던 거지요?

○ 000 담당자

네.

○ 000 위원(장)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청구한 게 그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청구한다고 그냥 간략하게만 적혀

있네요. 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지 이유 같은 건 없었나요?

○ 000 담당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신고자 전화번호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 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자면요.

결국은 지금 정보공개청구인께서는 본인이 119 응급구조의 이 혜택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자에 대해서 짐작건대 감사의 표시로 신고자를 알고 싶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000 담당자

정확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장)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이 청구내용을 보니까 신고자 본인도 전화번호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 000 담당자

네, 신고자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본인도 거부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소방위 퇴장)

주심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구체적인 사유 없이,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각하는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담당자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4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번호 2024-42] : (운영총괄과-4995) ‘특검2호 사업계획서 등 승인 알림’ 문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42호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이 안건을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두 안건 다 지금 소관부서도 동일하고 정보공개청구인도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특히 지금 특검2호 사업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 운영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련된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특정 운영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입니다.

○ 000 위원(장)

현재 지금 사업 중인 이 업체는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 000 주무관

올해 5월 1일부터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 000 위원(장)

5월 1일부터요? 정보공개청구인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특검2호 사업계획서 등 승인알림 문서, 그리고 붙임파일 등등인데요. 지금 아마 이 정보공개청구에서 핵심은 이 설계도면과 배치도를 달라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이분이 계속 이 허가받은 공간 외의 영업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 같

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그러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뚝섬2호의 해당 그 사업장 시설의 설계와 시공주체는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주체인가요?

○ 000 주무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는 저희 서울시에서 했고요. 그런데 일단 도면 중에 일부는 업체에서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들어가기 전에 비어 있는 데다가 어떻게 벽을 트고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도면도 제출한 게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붙임파일의 도면을 요구하시는데 이 도면이 서울시에서 설계시공을 해서 갖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해당 관련 건축자료인 셈이고, 다음에 여기 운영주체가 지금 말씀처럼 해당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설 내에 칸막이를 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해당 시설주체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이 청구인이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사업장 사업계획서를 정보제공청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내용에 따르면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게 있나요?

○ 000 주무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개선을 해서요. 계속 민원을 주셔서 저희가 많이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주장한 대로 계약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으면?

○ 000 주무관

그게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또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000 위원(장)

제가 주심이라서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확인했는데 해당 이 사업장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승인알림 해서 그 붙임파일 전체를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시는데요. 이 사업계획서에 관련되어서는 승인알림 쪽은 좀 애매하고요. 이 붙임파일 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당 사업주체가 나름대로 또 이 해당 사업장의 향후 개선 관련해서 본인의 노력으로 담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붙임파일 쪽 부분은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사업계획서 승인 쪽은 해당 지금 사업을 승인하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서울시 당국에서 제안한다 이런 조건들이 포함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까지 이걸 비공개를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지요.

○ 000 위원(장)

승인알림도 밑에 일부 내용을 제외한, 어쨌든 이 승인알림의 내용이 정보소통광장에 게시

버전도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미 이 승인알림 부분은 부분공개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 000 위원(장)

네, 그런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알았습니다.

○ 000 위원(장)

승인알림 중에, 그러니까 부분공개에서 비공개 부분, 불러 처리된 부분은 사실 이 영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본부랑 사전협의해야 될 내용들을 기재한 부분인데 지금 민원인 측에서는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더 이걸 하나하나 또 민원 제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영업과 관련해서 다 같이 7호로 비공개를 하면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 붙임문서 전부, 그러니까 이미 비공개 대상 자료 중에 결재 부분 이거는 그냥 참조 버전으로 주신 것 같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비공개 결정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2, 3, 4, 5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좀 복잡하게 논의보다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해당 사업계획서 등 승인알림은 지금 확인됐듯이 상당 부분들이 부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공개는 해당 사업주체의 경영상 기밀사항으로 하고, 특히 붙임과 일 부분은 해당 사업주체가 자신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이 설계도면과 추가 리모델링 사항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업상 비밀로 하고 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기각 의견입니다. 000 위원님 어떠십니까?

○ 000 위원(장)

저도 전체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어떠십니까?

○ 000 위원(장)

저도 전체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은요?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4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번호 2024-43] : (운영총괄과-4844) ‘똑섬2호 사용허가 알림’ 문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43호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문서 있잖아요, 공문서. 미래한강본부가 편의점 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서 보면 이게 수신인란은 비공개로 했는데요. 이게 일반입찰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이 사람이 낙찰된 건데 원래 낙찰자는 비공개인가요?

○ 000 주무관

낙찰자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요. 낙찰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여기서 계속 똑섬2호점이라고 해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 자체가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네. 저희가 그게 운영자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 000 위원(장)

그리고 다음번에 세 번째 첨부문서인데요. 이것도 전체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이라고 해서 이게 계약서 같아요. 이것도 전체를 비공개로 해 주신 건가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이라는 이 첨부파일 세 번째 거요. 이 전체가 비공개인 거지요? 일부 공개가 된 건 아니었지요?

○ 000 주무관

저희는 이거를 전체로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성질상 공법상 당사자 계약 같은데요. 사용허가조건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잖아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약간 표준계약서 양식 같은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전체, 이게 표준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조건 같은 거 빼고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나 뭐 이런 면적 같은 게 특정될 수 있는 건 빼고 이 표준계약서 양식 부분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자체가 비공개인가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일단은 표준계약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한강에 맞춰서 이 계약 조건을 많이 저희가 표준적으로 한강매점 계약서 양식으로 만든 건데요. 저희가 현안이 있으면 넣었다가 어떤 조건을 뺐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맨 앞에 운영업체라든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 도장도 찍히고, 운영기간도 나오고 해서 저희는 이걸 비공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000 위원(장)

전체가 계약내용이라서 그냥 비공개다? 경영상·영업상 운영하는 계약내용이라고 봐서 비공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 사용료 이런 것들은 비공개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손실보상이나 비용부담 이런 것들은 그냥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써놓은 거라서 이런 것들은 표준계약서 양식처럼 공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쟁 해결 아니면 효력 발생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준계약서처럼 보여서 어떤 계약을 할 때 당사자와 구체적인 내용

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비공개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딱 표준계약서 양식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서 이 부분들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어떤가 싶어서요.

○ 000 주무관

사실 이게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같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 000 위원(장)

계약서가 올라가 있어요?

○ 000 주무관

네.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공개청구하신 분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셔서요.

○ 000 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서에 입찰할 때 올라가 있는 계약내용들은 공개를 해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추가된 문구들만 비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정보공개청구인이 입찰할 때 올라간 자료들을 다 아는 상태인 건가요?

○ 000 주무관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이 자체를 비공개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 000 주무관

저희는 그냥 일단 이게 계약서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그냥 일부만 비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 000 위원(장)

그래도 될 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입찰할 때 올라가 있는 조건들은 공개를 하고, 이 계약할 때 추가로 쓰여진 내용들만 비공개로 해서 청구인한테 주면 오히려 더 청구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000 주무관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름이나 기간이나 사용료 이 정도를 가리고.

○ 000 위원(장)

네.

○ 000 주무관

그거는 가능하니까.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게 법령상의 의무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라든가 관련 어떤 전문직의 경우에 영업장에 면허증이라든가 의사자격증, 면허증들을 보통 게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의무사항인지는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탁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위탁하고 있다는 거를 해서 보통 벽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허가서라든가 이런 쪽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 000 주무관

운영자가 매장에 사업자등록증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매장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 명의든 아니면 개인 명의든 간에 이름이 적혀 있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000 위원님께서 그러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문의 수신은 낙찰자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
다니까 이 문서 자체는 그냥 기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도 이게 당사자의 영업상·경영상 비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것도 비공개하고요. 또 세 번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은 입찰계약서에 올라간 표준계
약서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공개로 하고, 나머지 낙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
약조건이 추가로 들어간 사안은 비공개로 해서 부분공개 결정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

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43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인용의 취지는 앞서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청구 부분은 다 기각하
고요.

마지막에 공유재산허가서상에서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거는 다 익명 처리하시고, 이 공
유재산허가서 부분을 부분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000 주무관

네. 그러면 공문 본문은 다 비공개하는 건가요?

○ 000 위원(장)

네.

○ 000 주무관

허가서만.

○ 000 위원(장)

허가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익명 처리하시고요. 나머지는 공개하시면 되겠
습니다.

7. [의안번호 2024-44] : 똑섬유원지 매점 똑섬2호점 관련 문의

○ 000 위원(장)

이제 안전 상정 마지막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4호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구인이 요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물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면적을 그림으로 알고 싶다 이게 아마 도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관부서에서도 직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용허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인도 알고 있어서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요. 14조의 위약금 조항에서 특수 조건들을 위반해서 이게 위약금을 부과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나간 횟수를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시정권고를 해서 시정만 나간 건가요? 어떤 이걸 구체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업체에게 계속 시정권고를 했고, 업체가 그 부분들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업체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영업상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이 도면 부분은 이 매점이 다중이용시설이고요. 특히 똑섬2호는 한강에 있는 매점 중에 가장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할 경우에 시민 안전이라는 부분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도면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좀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여기 특수조건들을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지시와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명령을 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14조에서는 이게 그냥 한 번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바로 위약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권고를 몇 번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를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걸로 방금 말씀을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 000 주무관

네. 그리고 위약금은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반드시 위약금을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 000 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000 위원(장)

그러면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주심위원님께서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저는 기각 결정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기각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이 기각 의견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설령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받은 부분도 당연히 저는 이게 영업상 비밀보다는 법인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징계사항과 마찬가지로요. 뭐 그런 의미에서요.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44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